

의안번호	제호
의결연월일	2008. 07. . (제 회)

의결사항

거창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안자	신주범의원 외 1인
제안연월일	2008. 07. .

거창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번호	제 호
------	-----

제안연월일 : 2008. 07. .
제안자 : 신주범의원의외 1인

1. 제안이유

일반주거지역에서 용적률의 최댓한도는 관할구역의 면적, 인구규모, 용도지역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우리 군은 타시군에 비해 용적률과 고도제한이 심해 이를 군 실정에 맞게 토지의 이용율을 높이고 부당한 규제를 완화하여 군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 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가.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토지 형질변경 규모를 변경하고자 함(안 제19조).

- 농림지역 : 1만 제곱미터 미만 ⇒ 3만 제곱미터 미만

나.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을 상위법의 범위 내에서 상향 조정하고자 함(안 제58조).

- 제1종 일반주거지역 : 150퍼센트 이하 ⇒ 200퍼센트 이하

- 제2종 일반주거지역 : 200퍼센트 이하 ⇒ 250퍼센트 이하

- 제3종 일반주거지역 : 250퍼센트 이하 ⇒ 300퍼센트 이하

다. 제2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규모를 확대함(별표 4).

- 건축물 층수 확대 : 12층 이하 ⇒ 15층 이하

라.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연면적을 확대함(별표 8).

- 건축물 연면적 확대 : 70퍼센트 이하 ⇒ 90퍼센트 이하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,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·제85조

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

다. 신·구조문 대비표 : 별첨

거창군 조례 제 호

거창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거창군 계획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9조제4호 중 “1만 제곱미터” 를 “3만 제곱미터” 로 한다.

제58조제1항제3호 중 “150퍼센트” 을 “200퍼센트” 로 하고, 같은 항 제4호 중 “200퍼센트” 을 “250퍼센트” 로 하며, 같은 항 제5호 중 “250퍼센트” 을 “300퍼센트” 로 한다.

별표 4의 본문 중 “12층” 을 “15층” 으로 한다.

별표 8 제2호 중 “70퍼센트” 을 “90퍼센트” 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